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25 선고 2024가단50151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홍성용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9. 11.

판 결 선 고 2024. 9. 25.

주 문

1. 가. 피고 B과 E 사이에 [별지] 목록 기재 1, 2,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B은 E에게 [별지] 목록 기재 1, 2,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. 3. 21. 접수 제419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가. 피고 C과 E 사이에 [별지]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C은 E에게 [별지]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. 3. 21. 접수 제41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가. 피고 D와 E 사이에 [별지] 목록 기재 4, 5,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

나. 피고 D는 E에게 [별지] 목록 기재 4, 5,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. 3. 21. 접수 제41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가. 피고 D와 E 사이에 [별지]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D는 E에게 [별지]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. 3. 21. 접수 제419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5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E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출거래약정(이하 ‘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위 약정에 기하여 E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.

구분	대출금액(원)	대출일	상환방법
순번1	25,000,000	2021. 8. 13.	120개월 원금균등 분할상환
순번2	16,000,000	2021. 10. 8.	120개월 원금균등

브이사하

나. E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이자 등을 연체하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아 2022. 6.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2. 10. 28.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159340호로 위 대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2022. 10. 31. ‘E은 원고에게 52,558,512원 및 그중 49,301,8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.

라. 한편 E은 2022. 3. 2. [별지] 목록 기재 1, 2, 7 각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, [별지]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 C에게 증여하며, [별지] 목록 기재 4, 5, 6, 8 각 부동산(이하 [별지]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‘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’이라 한다)을 누이인 피고 D에게 증여(이하 위 증여를 통틀어 ‘이 사건 각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하여, 2022. 3. 21. 위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E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F, G 주식회사, 주식회사 H, 주식회사 I,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, J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 결과,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주식회사 H, G 주식회사, 주식회사 I, 주식회사 F,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다40955 판결,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3841 판결,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. 3. 2. 이전에 이미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 성립의 기초가

되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, E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한편 채무자 E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형제인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E 및 피고들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김민정

별지